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337038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4.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0. 7.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7,622,3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7,622,3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01. 4. 24. D조합로부터, 2001. 10. 27. E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위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수하였다. 원고는 작 C를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청구의 소(이하 '양수금 소송')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2016. 9. 23. 변론종결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C는 원고에게 2,601,266원 및 그 중 1,079,372원에 대하여 2005.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0%, 962,843원에 대하여 2005.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707964) 위 판결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다. F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9. 11. 14. 사망하였다. F의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피고, G, C가 있었고, 상속지분은 각 1/3이다.

라. 피고, G, C는 2020.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마. 피고는 2020.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같은 날 아래 표 순번1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순번2, 3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순번	설정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1	2020.7.15.	9,600만 원	피고	중소기업은행
2	2004.7.9.	4,420만 원	F	주식회사 H
3	2013.5.20.	2,936만 원	F	주식회사 H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외에 달리 적극 재산이 없었다.

사. 2022. 11. 10. 기준 원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원리금은 27,622,303원(=원금 2,042,215원 + 이자 25,580,08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 7, 8, 9(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확정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에 의한 채권으로서 양수금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피고의 주장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위 법리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여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킴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피고의 기여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 G, C 사이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거나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기존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

2) 취소 범위 및 가액배상금 산정

가) 책임재산의 산정

(1)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억 7,000만 원(갑11-2)

(2) 공제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마.항 표 순번2, 3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7,356만 원(실제 피담보채권액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채권최고액을 공제함)

(3) 공제할 장례비: 6,596,090원[원고 자인,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

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4) 계산: (3억 7,000만 원 - 7,356만 원 - 6,596,090원) $\times$ 1/3 = 96,614,636원

나) 원고의 채권액: 27,622,303원

다) 가액배상액: 가).(4).항 금액과 나)항 금액 중 적은 액수인 나)항 금액

3)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7,622,303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622,3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동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벽식조 44.52 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 48278.9 m²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8278.90 분의 26.82